

산업안전보건 조사, 분석, 자료 공개 유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산업의학과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위원장
안 연 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관련 조사 규모와 조사 자료의 전산화 실태를 본 외국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에 놀란다고 한다.

첫 번째는 국민의 의료기관 외래 이용까지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전산화하여 국민의 보건 문제를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것에 놀라고, 두 번째는 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이용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놀란다고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나친 표현이지만,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나오는 논문이나 정책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리라.

필자가 외국에 가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이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논문을 발표할 때도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unbelievable!”, “amazing!”, “really?”이다. 필자의 발표와 논문이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자료를 보유한 대한민국에 대한 감탄사(?)라고 생각하며 나름 뿌듯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산업안전보건자료라 함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수행한 조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관련 정책수립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조사·수집한 1차 자료와 행정적 처리 등을 위해 구축된 자료인 2차 자료로 대별된다.

2차 자료의 대표적인 것이 산업재해현황분석, 특수건강진단자료 및 작업환경측정자료이다. 1차 자료로, 현재는 조사 중단된 것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근로자 건강실태 조사, 전국제조업체 작업환경 실태조사, 근로환경조사 등이 있다.

이 중 특수건강진단자료와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자료는 핀란드 등 북유럽 일부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전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우리와 유사한 산업안전보건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도 제도는 있지만 개개인의 특수건강진단결과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들 자료를 잘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이나 연구에 얼마나 활용하였는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다.

자료의 질 관리와 활용도 문제가 개선된다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크게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료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자료와 같은 1차 자료는 자료 생성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수집·자료화 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생성기관에서 양질의 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언

자료 생성에 대한 비용도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보다는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기술적, 체계적 지원을 하여 양질의 자료를 생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1차 자료 생성기관에 대한 자료의 질관리는 차치하더라도, 수집된 자료에 대한 데이터 정리, 분류, 분석 등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자료 중 가장 기본인 업무상질병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 질병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질병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통계라는 것은 정확할 때 의의가 있다는 것은 기본 중에서 기본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분석 과정의 전문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재해현황, 특수건강진단 등 많은 자료의 단위가 근로자 개개인이다. 고유의 목적이 아닌 정책적 사용이나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도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 동의의 합법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진단결과 중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며, 어떻게 이용된다는 것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충족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근로자 동의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이런 구체적인 동의를 얻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1차 자료 생성기관에 넘기는 것은 이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산업안전보건 조사에 대하여 조사방법, 주기, 연속성 유지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근로환경조사는 EU의 취업자 근로환경 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EWCS)를 벤

치마킹하여 실시한 것이다.

이 조사는 100여개 이상의 조사항목으로 EU 전체 국가에서 약 1만 명 정도를 4-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 2회는 5년 간격으로 수행하였으나 금년부터 5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수행하기로 하고 실시하였다. 아마도 자료를 분석하기도 전에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이 근로환경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인데,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방대한 조사, 분석, 정책수립, 정책평가가 매 1년마다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보다는 이 조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표본설계, 조사방법의 다양화, 패널조사, 적절한 통계분석, 정책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좀 더 시간적, 경제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다섯째, 자료 생성시 근로자 동의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방대한 자료를 모든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 자료 가공하고 활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 공개는 산업안전보건 연구 발전과 정책수립을 위한 많은 기초자료 생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늘도 많은 산업안전보건자료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수집, 조사되고 있다. 이 방대한 자료가 제대로 질 관리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될 때 산업안전보건의 학문적, 정책적 발전이 담보될 것이다. 🍷